##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64

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이헌승·박덕흠·서지영

김선교・김 건・송언석

김소희 · 김상훈 · 주호영

김형동 • 박준태 • 김도읍

이상휘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통사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(形象)을 봉안(奉安)하고 승려가 수행(修行)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인데, 단순 한 종교시설이 아닌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음.

전통사찰은 대체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, 피해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다할 수 있음. 그러나,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화재 위험성이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 등으로 인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전통사찰을 유지·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·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의2제1항 중 "설치하도록"을 "설치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할"을 "설치 및 유지·관리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할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	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
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	①
찰의 화재 및 재난, 도난 등의	
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<u>설</u>	<u>설</u>
<u>치하도록</u> 노력하여야 한다.	치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하도
	<u>록</u> 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	②
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	
방재시설을 <u>설치 또는 유지·</u>	<u>설치 및 유지·관</u>
<u>관리할</u>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	리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할
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	
지원할 수 있다.	
	<u>.</u>